

2011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(안)

안전번호 2011-150

발의년월일 : 2011. 12. 2 .

제안자 : 교장 박인원 **박인원**

I. 제안 이유

- 마이스터고 선정으로 인하여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를 학생수 규모에 맞게 운영위원 정수를 조정 개정하고자 함.

II. 관련 근거

-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-275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통보 및 1~2차 선정 마이스터고
- 초·중등교육법
 - 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 - 제58조(국·국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)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이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한다.
 -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: 9인 이상 12인 이내

III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절차(제5장 규정의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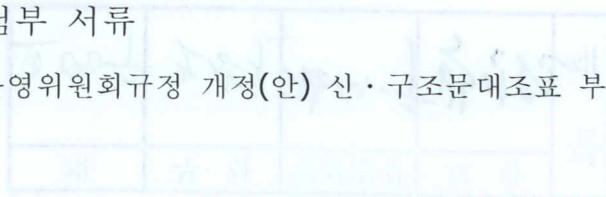
- 제23조(개정의 제안)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제적위원 1/3 또는 학교장 발의로 제안
- 제23조(공고)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공고
- 제23조(규정의 개정)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제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 위원장이 공고

IV.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심의사항

-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의 정수 개정

V. 기타 첨부 서류

-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조표 부. 끝.



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(안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장 운영위원회의 구성</p> <p>제4조(위원의 정수)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하며, 학부모위원 5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원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.</p>	<p>제2장 운영위원회의 구성</p> <p>제4조(위원의 정수) <u>위원 정수는 9명</u>으로 하며, <u>학부모위원 3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, 지역위원 4명</u>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원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.</p>

● 전문계고등학교 정수별 위원수 ●

위원별 규모별	정수별	학부모 위원 (30% ~ 40%)	교원 위원 (20% ~ 30%)	지역위원 (30% ~ 50%)
학생수 200명 ~ 999명	9명	3명 (2,7~3,6)	2명 (1,8~2,7)	4명 (2,7~4,5)
	10명	3, 4명 (3,0~4,0)	2, 3명 (2,0~3,0)	3, 4, 5명 (3,0~5,0)
	11명	4명 (3,3~4,4)	3명 (2,2~3,3)	4명 (3,3~5,5)
	12명	4명 (3,6~4,8)	3명 (2,4~3,6)	5명 (3,6~6,0)